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17일까지 게시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기간 동안 당사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업체 노동조합 제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1.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 현황

교섭요구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한국노총]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
노동조합 대표자	조승호	이주안	도기범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26.03.10	2026.03.10	2026.03.11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충청남도 천안시
조합원 수	198명	300명	20명
교섭안전	- 산업안전 의제(중대재해 예방, 건강장해 예방, 노사 안전 상생 등) - 다단계 불법하도급 예방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교섭요구 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한국노총] 한국산업건설노동조합
노동조합 대표자	김대식	김경수	이승조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26.03.12	2026.03.12	2026.03.13
소재지	대구시 달서구	경기도 오산시	서울시 마포구
조합원 수	기재 없음	8명 ('26.08.11 수정)	48명 ('26.08.11 수정)
교섭안전	기재 없음	- 산업안전 - 임금 및 단가 - 작업환경	- 건설현장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 관련 사항 -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 - 건설현장 운영 관련 개선

교섭요구 노동조합	[한국노총] 섬유건설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건설기계일반노동조합	
노동조합 대표자	오영봉	정홍석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26.03.17	2026.03.26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대전시 중구	
조합원 수	80명	420명	
교섭안전	- 동일노동 동일임금 - 현장 안전 강화 - 노조 차별 금지	- 중대재해예방 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 강화 - 폭염 폭한 등 작업환경 대응 - 적정임금 보장 및 임금체불 방지 - 재하도급 금지 및 관리 강화	

2. 공고 기간 : 2026. 08. 18 ~ 2026. 08. 23

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위 확정 공고 내용이 해당 노동조합이 회사에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었거나,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공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 아래 접수처로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R팀 02-3433-7206, Fax 02-3433-7111)

2) 위 공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고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자율적 창구 단일화 등)가 진행됩니다.

※ 교섭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이후, 해당 노조가 교섭요구 당시에 제시된 교섭안건 중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권이 미친다고 판단한 근거 (노동위원회 결정문 등)”가 있는 경우 해당 교섭안에 대하여 교섭할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18일

쌍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인수

